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680
----------	------

2024년 4월 25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4월 2일, 김춘곤 의원 (찬성자 39명)
- 나. 회부일자 : 2024년 4월 8일
- 다. 상정일자 :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4년 4월 25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춘곤 의원)

가. 제안이유

- 도로시설물(교량·고가차도·입체교차 등)에 부속된 방호울타리 등 나머지 도로부속물과 시선유도표시 등 교통안전 관련 도로부속물의 관리기관을 도로시설물별 관리기관으로 일원화하여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한강교량과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에 부속된 방호울타리 등 나머지 도로부속물과 시선유도표시 등 교통안전 관련 도로부속물의 관리기관은 재난안전관리실장으로 하고 그

외 도로시설물의 나머지 도로부속물과 교통안전 관련 도로부속
물의 관리기관은 도로사업소장으로 함.(안 별표 1)

3. 검토보고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개요

-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 등 주요시설물을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서울시 도로시설물 중 한강교량과 1종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에 부속된 ‘나머지 도로부속물’·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의 관리기관을 시설물 관리기관인 재난안전관리실로 일원화하는 한편,
- 차도 및 보도의 청소 범위에 지하보도를 포함토록 하여 자치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주요시설물 관리기관(제5조 관련)			[별표 1] 주요시설물 관리기관(제5조 관련)				
구 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구 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도로	서울특별시도	○도로시설물 중 한강교량,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	재난 안전 관리 실장	도로	서울특별시도	○도로시설물 중 한강교량,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	재난 안전 관리 실장
		○차도관리(버스전용차로, 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전용차로 포함)	도로 사업 소장			○차도관리(버스전용차로, 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전용차로 포함)	도로 사업 소장
		○도로시설물(한강교량,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 제외)	자치 구청장			○도로시설물(한강교량,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 제외)	자치 구청장
○보도관리(측구,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보행자겸용 도로 포함)	자치 구청장	○보도관리(측구,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보행자겸용 도로 포함)		자치 구청장			
○차도 및 보도 의 청소(낙하물을 포함하되 터널·지하차도 내 기계화청소가 불가능한 낙하물은 제외)		자치 구청장	○차도 및 보도(지하보도 포함) 의 청소(낙하물을 포함하되 터널·지하차도 내 기계화청소가 불가능한 낙하물은 제외)		자치 구청장		
도로 부속물	나머지 도로 부속물 (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과속방지시설·미끄럼방지시설·충격흡수시설·낙석방지망·절개차·도로 옹벽·방음		○자동차전용도로(차도 및 보도)의 나머지 도로부속물 <신 설>	재난 안전 관리 실장		도로 부속물	나머지 도로 부속물 (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과속방지시설·미끄럼방지시설·충격흡수시설·낙석방지망·절개차·도로 옹벽·방음
		○서울특별시도(차도)의 나머지 도로부속물(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차로 포함)	도로 사업 소장	○서울특별시도(차도)의 나머지 도로부속물(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차로 포함)	도로 사업 소장		
		○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나머지 도로부속물		(생 략)			
(생 략)			(생 략)				

	벽, 맨홀 등)	(생략)	
교통 안전 관련	시선유도 표지·시선유도봉·갈매기 표지·도로반사경·차량진입금지시설 및 무단횡단 금지 시설, 교통섬 등	○지침운용, 사업계획 수립 등 업무총괄	재난 안전 관리 실장
		○자동차전용도로의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	재난 안전 관리 실장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	도로 사업 소장
		○서울특별시도의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보도의 차량진입금지시설·교통섬 제외, 중앙 및 환승정류소 보도관리 포함)	도로 사업 소장
		(생략)	
		(생략)	

	벽, 맨홀 등)	(생략)	
교통 안전 관련	시선유도 표지·시선유도봉·갈매기 표지·도로반사경·차량진입금지시설 및 무단횡단 금지 시설, 교통섬 등	○지침운용, 사업계획 수립 등 업무총괄	재난 안전 관리 실장
		○자동차전용도로의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	재난 안전 관리 실장
		○한강교량,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에 대한 교통 안전관련 도로부속물	도로 사업 소장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 (한강교량,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제외)	도로 사업 소장
		(생략)	
		(생략)	

■ 서울시 도로시설물 현황

- 도로시설물¹⁾은 도로에 설치된 교량이나 터널·고가차도·입체차도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로서 서울특별시 내 설치된 도로시설물은 총 11종 1,204개소이며 총연장은 470.8km임([표] 참조).

[표] 2024년 도로시설물 현황 (2024. 2월 기준)

[단위: 개소, m]

구분	계	한강 교량	일반 교량	고가 차도	입체 교차	터널	지하 차도	지하 보도	보도 육교	복개 구조	공동구	언더 패스	
합계	1,204	22	516	94	44	47	167	80	146	74	8	6	
합계	연장	470,882	56,521	65,899	84,917	12,087	25,049	54,828	4,778	7,340	83,100	74,770	1,593
	1종	121	22	28	23	5	17	6		20			
	2종	228		63	28	17	21	62		29	8		
	3종	573		234	37	20	4	81	54	124	13	6	
	법정 외	282		191	6	2	5	18	26	22	12		

- 1)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로서, 차도와 보도(도로시설물 내 차도와 보도 포함), 도로시설물을 말한다.
 2. "도로시설물"이란 교량·터널·고가차도·입체교차 및 지하차도 등을 말한다.

	합계	605	22	238	83	44	36	118			50	8	6
	연장	409,855	56,521	55,744	81,820	12,087	23,298	47,416			56,606	74,770	1,593
시	1종	117	22	28	22	5	17	6			17		
	2종	200		57	24	17	19	53			22	8	
	3종	257		138	31	20		51			11		6
	법정 외	31		15	6	2		8					
자치 구	합계	599		278	11		11	49	80	146	24		
	연장	61,027		10,155	3,097		1,751	7,412	4,778	7,340	26,494		
	1종	4			1						3		
	2종	28		6	4		2	9			7		
	3종	316		96	6		4	30	54	124	2		
법정 외	251		176			5	10	26	22	12			

○ 시는 시설물의 규모 및 연식에 따른 안전점검 시기 선정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2)에 따라 1종, 2종, 3종 및 법정외 시설물로 구분하고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3)에 근거하여 안전점검

-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가.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 나.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 다.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 라.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마.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바.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사. 광역상수도, 공업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2. 제2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가.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 나.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터널
 - 다.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 라.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마.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바. 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사. 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3. 제3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시설물
-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① 법 제11조제1

을 실시하고자

- 도로시설물을 포함한 도로, 도로부속물 등의 총괄관리자를 재난안전관리실장으로 지정⁴⁾하고 제5조⁵⁾에 따라 시설물의 유지·관리사무를 [별표 1]에서 정한 관리자에게 위임하고 있음.
- 이에 서울특별시도 내 도로시설물 중 한강교량 22개소를 비롯

항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3종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시기는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이란 별표 4에 따른 시설물별 주요 부분을 말한다.

④ 관리주체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

2.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다만, 공공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해당 기관의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시기는 별표 3과 같다.

② 관리주체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2.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다만, 공공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해당 기관의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을 포함하는 복합된 시설물(건축물은 제외한다)의 구조안전에 관련된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자에게 해당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관련되는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하여야 한다.

4)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총괄관리자 지정) ① 시장은 재난안전관리실장, 도시교통실장, 기후환경본부장과 푸른도시여가국장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설물의 총괄관리자로 지정한다.

1. 재난안전관리실장 : 도로, 공동구, 그 밖의 도로부속물(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 포함), 도로기능 하천복개구조물

5)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설물의 관리기관은 별표 1과 같으며, 시장은 해당 시설물의 유지·관리사무를 별표 1에서 정한 관리자에게 위임한다.

② 관리자는 시설물의 구조나 용도 등으로 특히 필요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사무의 일부를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행정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대행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의 관리자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탁자 또는 대행기관은 해당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제2항에서 정한 유지·관리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시키는 관리자는 수탁자 또는 대행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감독책임을 진다.

하여 1종 시설물 중 일반교량 28개소, 고가차도 23개소, 입체교차 5개소는 재난안전관리실에서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을 제외한 도로시설물 527개소에 대해서는 도로사업소장을 관리자로 지정하고 6개 도로사업소⁶⁾ 및 서울시설공단 등에 위임하여 관리하고 있음.

- 여기서, 서울특별시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나머지 도로부속물’과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의 경우 해당 도로시설물의 관리기관과는 별개로 유지관리 기관을 도로사업소로 일괄하여 지정하고 있는 특이한 상황임([표] 참조).

[표] 현행 도로시설물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도로부속물 관리 현황 ([별표 1] 중 발췌)

구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도로	서울특별시도	도로시설물 중 한강교량,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	재난안전관리실장
		도로시설물 (한강교량,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 제외)	도로사업소장
도로부속물	나머지 도로부속물 (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과속방지시설·충격흡수시설·미끄럼방지시설·낙석방지망·도로사면·도로옹벽·방음벽·맨홀 등)	서울특별시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나머지 도로부속물	도로사업소장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	시선유도표지·시선유도봉·갈매기 표지·도로반사경·차량진입금지시설·무단횡단금지시설·교통섬·표지병	서울특별시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	도로사업소장

- 일반적으로 도로시설물에 설치된 도로부속물은 시설물의 도로포장 정비나 공사로 인해 제거된 후 재설치되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고, 사실상 도로시설물을 점검하면서 부속물에 대한 이상유무 점검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실에서

6)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성동, 강서

유지관리하는 도로시설물에 대한 도로부속물의 유지관리가 현행 [별표 1]과 같이 도로사업소장보다는 재난안전관리실장이 실시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이 현실임.

■ 개정안에 대한 의견

- 본 개정안은 도로시설물 중 한강교량과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을 총괄 관리하는 재난안전관리실의 업무 범위에 그에 부속된 나머지 도로부속물과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의 유지관리 업무를 추가하여 관리기관을 일원화하고 도로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 이는 현장에서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한강교량과 1종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에 대해 해당 시설물에 부속된 나머지 도로부속물(교통안전관련 포함)을 하나의 관리자가 일괄하여 통일성 있게 유지관리토록 함으로써 현실적 측면과 효율적 측면을 제고한다 하겠음.
- 한편, 별표 1의 시장으로부터 자치구청장이 사무를 위임받아 업무를 추진 중인 서울특별시도 내 ‘차도 및 보도의 청소’ 중 보도에 ‘지하보도’를 포함토록 하려는 것은 위임된 사무의 업무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여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치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춘곤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680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4월 02일

발 의 자: 김춘곤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재진, 김지향,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박상혁,
박 석, 박영한, 박춘선,
송경택,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옥재은, 유만희,
윤기섭, 이경숙, 이민석,
이병윤, 이숙자, 이승복,
이희원, 임춘대, 채수지,
최민규, 최유희, 최진혁,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의원(39명)

1. 제안이유

- 도로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 등)에 부속된 방호울타리 등 나머지 도로부속물과 시선유도표시 등 교통안전 관련 도로부속물의 관리기관을 도로시설물별 관리기관으로 일원화하여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한강교량과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에 부속된 방호울타리 등 나머지 도로부속물과 시선유도표시 등 교통안전 관련 도로부속물의 관리기관은 재난안전관리실장으로 하고 그 외 도로시설물의 나머지 도로부속물과 교통안전 관련 도로부속물의 관리기관은 도로사업소장으로 함.(안 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주요시설물 관리기관(제5조 관련)

구 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도로	서울 특별시도	○ 도로시설물 중 한강교량,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	재난안전관리실장
		○ 차도관리(버스전용차로, 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전용차로 포함)	도로사업소장
		○ 도로시설물(한강교량,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 제외)	자치구청장
	○ 보도관리(촉구,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보행자겸용 도로 포함)		
자동차 전용도로	○ 차도 및 보도 관리(청소 포함)	재난안전관리실장	
	○ 녹지 및 가로수	재난안전관리실장	
도로 부속물	공동구	○ 공동구	재난안전관리실장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	○ 서울특별시도(자동차전용도로 포함)의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생태통로 포함)	자치구청장
	가로등·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	○ 자동차전용도로의 가로등·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	재난안전관리실장
		○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	도로사업소장
	나머지 도로부속물 (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과속방지시설·미끄럼방지시설·충격흡수시설·낙석방지망·절개지·도로 옹벽·방음벽·맨홀 등)	○ 서울특별시도의 가로등	자치구청장
		○ 서울특별시도의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에 대한 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	재난안전관리실장
		○ 자동차전용도로(차도 및 보도)의 나머지 도로부속물	
○ 한강교량,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에 대한 나머지 도로부속물			
서울특별시도(차도)의 나머지 도로부속물(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차로 포함)	○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나머지 도로부속물 (한강교량,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 제외)	도로사업소장	
	○ 서울특별시도(중앙버스전용차로 제외)의 보도에 대한 나머지도로부속물 (보도의 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부속물 포함)	자치구청장	
	○ 중앙버스전용차로의 나머지 도로부속물	도로사업소장	
교통 관리 시설	지능형 교통체계	○ 교통정보의 수집, 제어, 가공, 제공시스템 및 관련 설비와 긴급 연락시설	도시교통실장
	버스전용 차로 단속 시스템	○ 버스전용차로(중앙 및 가로변) 유·무인 단속시스템	도시교통실장
	도로표지	○ 문안검토	도시교통실장
		○ 자동차전용도로의 도로표지	재난안전관리실장
		○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도로표지	도로사업소장
교통 안전 시설	신호기·안전표지	○ 서울특별시도의 도로표지	자치구청장
		○ 지침운용, 사업계획 수립 등 업무총괄	도시교통실장
	○ 자동차전용도로의 안전표지	○ 서울특별시도의 노면표시	재난안전관리실장
		○ 서울특별시도의 신호기 및 안전표지	도로사업소장
○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			
○ 신호기 공사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 관할 도로의 안전표지 설치	자치구청장		
○ 구 관할 도로의 안전표지 설치 및 관리			
교통	시선유도표지·시선	○ 지침운용, 사업계획 수립 등 업무총괄	재난안전관리실장

안전 관련 도로 부속물	유도봉·갈매기표지·도로반사경·차량진입금지시설 및 무단횡단금지 시설, 교통섬 등	○ 자동차전용도로의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	재난안전관리실장	
		○ 한강교량,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에 대한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		도로사업소장
		○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한강교량,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제외) ○ 서울특별시도의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보도의 차량진입금지시설·교통섬 제외, 중앙 및 환승정류소 보도관리 포함)		
	○ 서울특별시도(보도)의 차량진입금지시설, 교통섬	자치구청장		
하천 시설	한강	○ 한강의 제방, 호안, 수제, 보, 관측시설 등	미래한강본부장	
		○ (육)갑문의 구조물, 조명시설 및 진입로 시설물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 (육)갑문의 문짝, 권양기 시설물, 통로청소, 수문개폐		자치구청장
	국가 및 지방 하천(한강 제외) · 국가 및 지방 하천 이외 하천	○ 제방, 호안, 수제, 보, 관측시설 등 ○ 빗물펌프장(유수지 포함)의 구조물, 배수펌프 및 부대시설물 ○ 호안블록, 옹벽, 도수로, 우수토실시설 및 부대시설물 등 ○ 수문의 구조물·문짝·권양기 등 관련 시설 ○ 갑문의 구조물·문짝·권양기·통로청소·수문개폐 등 ○ 갑문의 조명시설 및 진입·진출로 시설 ○ 그 밖의 하천시설	자치구청장	
하수 도	공공하수처리시설	○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물재생센터소장 (위탁업체대표)	
	차집관거	○ 차집관거 및 부대시설	물재생센터소장 (위탁업체대표)	
	하수관거	○ 하수관거 및 부대시설	자치구청장	
복개 구조물	하천복개구조물	○ 도로기능 하천복개구조물	도로사업소장 또는 자치구청장	
		○ 도로기능 외 하천복개구조물	주 기능별 설치사용자	

비 고 : 위 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시설물관리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청계천 제외지(堤外地)와 청계천 복개구간의 개구부(開口部) 수문 : 물순환안전국

나. 청계천로(태평로에서 고산자로 사이에 위치한 도로 부분을 말한다) 천변 측에 설치된 방호울타리 : 재난안전관리실장

다. 하천과 공원 내 자전거도로는 하천과 공원 관리자를 자전거도로 관리자로 함

라. <삭 제>

참고1) "차도"란 보·차도 경계측구를 제외한 포장측을 말함.

참고2) 도로부속물의 "절개지"란 도로 개설로 인하여 절토된 부분의 비탈면을 말함.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요시설물에 대한 관리기관 관리자를 변경 위임하는 내용으로 서울시의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안 별표1)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추 계 분 석 관	이홍래

☎ 02-2180-7952
e-mail : hong1004@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